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(충청북도조례 제1866호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